

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 (제2조제1호가목 관련)

비행의 유형	금품 등 수수액	100만원 미만		100만원 이상
		받은 경우	제공한 경우	
1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	파면-강등	파면-해임	파면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	해임-정직	파면-강등	파면-해임
3. 위법·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		강등-감봉	해임-정직	파면-강등
※비고 1. "금품 등"이란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이나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 2. "직무관련자"란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. 3. "직무관련공무원"이란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.				